

종합심사낙찰제공사의 입찰금액심사 세부시행요령

1.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및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입니다.

가. 입찰금액 심사는 「국방부 훈령 제2990호(‘24. 12. 13.)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과 본 세부시행 요령을 적용합니다.

나.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시 입찰자가 수식을 재확인, 검산하여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다. 종합심사의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구분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배포한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용하여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배부된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누락 / 변경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내 사업자번호와 물량내역서 내 업체 사업자 번호가 미일치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입찰금액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제7항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어 입찰금액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가. 심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 1) **입찰자는 BID파일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세부공종별 금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로 나누어 작성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합니다.
- 3)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는 정수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 4)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8-2호에 따른 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적용한 비율(이하 “적용비율1*”, “적용비율2**”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산출하여 반영(소수점 첫째자리)하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 **적용비율1** : 국군재정단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비율

** **적용비율2**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소수점5째자리에서 반올림 4째자리까지 표시)

※ 이 사업의 산출경비는(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운반비+건설폐기물상차비+공통시설비+품질관리비+입목폐기물처리비+건진법 안전관리비)로 합니다.

나. 법정 경비 산정기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과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이하 “합계액”이라 한다)에 적용비율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합니다.
- 2) 품질관리비, 건진법 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3) 환경보전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각 공종별로 평가합니다.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각 공종별로 평가합니다.
- 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각 공종별로 평가합니다.

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 적용비율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율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

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의 산정기준

- 1) 간접노무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비율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합니다.
- 2) 일반관리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순공사원가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합니다.
- 3) 경비 등 합계(각 항목별로 평가)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표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토목이 없는 경우 금액이 큰 공사)에 공제금액을 넣어 계산)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합니다.
 - 기타경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노무비(간접노무비포함)의 합에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비율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합니다.
 - 소방, 공사손해보험료 및 제비율적용제외 항목(세부항목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괄평가)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적용비율2를 곱한 금액

※ 이 사업의 제비율제외항목은(공사안전보건대장)로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1) 하역료, 완제품 등은 단가심사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2)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관세 등이 포함된 경우 적용비율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3) 철강설 등 음(-)의 금액은 물량내역서에 고정되어 있으며, 공종별 물량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4) 표준시장단가는 물량내역서(BID)에서 품명 앞에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 5) 직접공사비는 물량내역서 내 표기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완제품, 하역료 등의 합으로 계산하며 고정비용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비용 비중 | 100점 | 0점 |
|---------|--------------------|---------|
| 20% 미만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이내 | 그 외의 경우 |

- 6)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의 일위대가목록과 일위대가는 제출하지 않으나 낙찰자 결정 후 산출내역서의 일위대가목록과 일위대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계획서 작성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4】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과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자는** 하도급 할 공사의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금액을 전문건설 업종별로 산정하며,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나. 하도급 계획서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 , 하도급계획 심사 업종 공사비 산출서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 2 서식】 , 하도급계획서 심사업종 내역서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 3서식】 를 **BID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2】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의 요율은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 표의 ‘※작성 요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 조사금액의 산정은 조사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금액의 산정은 입찰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로 계산하되,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는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이상으로 계산하며, 이윤의 경우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정한 이윤의 비율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에서의 이윤은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한 경우 “0”원으로 합니다.

마.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 2】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제비율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바. 【중심제 훈령 별지 제6호의2】의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미확정설계항목(PS), 제비율 적용제외항목 및 공사(소방)손해보험료는 미기재(0원)합니다.

사. 복합공사 내 기타공사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4. 보안사항 준수의무

가. 배부한 자료는 입찰집행에만 사용하고 복사 및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배부한 자료를 수령한 자는 본인 사용 외 타인 사용 시 상기 ‘가’를 주지시킬 책임이 있고, 모든 책임은 회사 대표자 및 배부한 자료를 수령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배부자료

- 가. 종합심사낙찰제공사의 입찰금액심사 세부시행요령: 파일 1개
- 나. 물량내역서(BID) : 파일 1개
- 다. 조사내역서(엑셀) : 파일 1개
- 라. 입찰내역관리프로그램(BID) : 파일 1개
- 마. 입찰내역관리프로그램 메뉴얼 : 파일 1개

6. 입찰 제출서류(‘업체명.BID’로 저장 제출)

- 가. 물량내역서(BID)
- 나. 자기평가기술서

7. 산출내역서 작성 간 문의처

- 가. 국군재정관리단 제2공사계약과 내역담당 : 02-3146-6644
- 나. 국방시설본부 공군/국직 사업관리과 : 02-748-4392